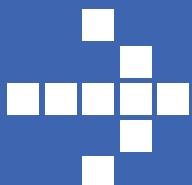


금융 생활 안내서_
은행 · 중소서민금융 편

금융거래의 이해



01_ 금융의 의의

02_ 금융실명제

03_ 신용정보의 관리

금융거래의 이해

금융의 의의

금융이란 남는 돈을 빌려 주고,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자금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유통되는 것(자금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가계 및 정부는 여유 자금을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며, 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원활한 금융을 위해 금융기관이 필요하고, 필요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금융실명제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금융기관은 실지명의(이하 실명)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 실명 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금계좌 신규개설, 송금, 수표어음의 지급 등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예금주, 송금인, 소지인 등의 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1993년 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령」을 폐지하고 1997년 이를 대체입법하여 제정된 것으로 실명에 의해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시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에 의하여 본인 여부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보완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실명확인증표

실명확인증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만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도 가능합니다.

■ 실명확인

구 분	예 시
실명확인가능	①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여행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② 학생증, 청소년증,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포함), 공익근무요원증, 선원수첩, 국가유공자 (유족 포함)증 ③ 군인의 경우 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비밀취급인가증·군운전면허증
실명확인불가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유효기간이 지난 실명확인증표, 사원증·주민등록등·초본

● 실명확인 방법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명의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리인

명의인	신청인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본인	가족 ¹⁾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주 : 1)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외국인

명의인	신청인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외국인	본인	① 외국인등록증, 등록증이 없는 경우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② 투자등록증(증권거래서) 또는 외국인투자신고수리서 · 인가서
	대리인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공증받은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 실명확인 대상 거래

■ 실명확인이 필요한 거래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증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거래는 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입니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보험·공제거래 및 여신거래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어음할인은 실명확인 대상입니다.

● 실명확인 생략 가능 거래

금융거래시 예금통장, 비밀번호 및 인감을 소지한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 실명 확인된 계좌에 의해 일반 금융관행에 따라 계속 거래시 실명확인을 생략하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고지서 등에 납부명의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과금 등은 실명 확인 생략이 가능하며,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도 실명 확인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화 송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실명확인 대상입니다.

신용정보의 관리

● 신용정보란 무엇인가?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신용정보는 신용거래시 거래업체가 소비자의 신용을 파악하거나, 대출, 신용카드 발급, 이동통신 개설 등 경제활동 전반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용거래시 불량거래자에 대한 거래 거절 등 불량거래를 제재하기 위하여 불량정보를 공유하였으나, 최근에는 불량정보 이외에 신용도가 높은 우수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신용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신용거래에 대한 우량정보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구성

구 분	내 용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며, 타 신용정보와 결합되어 이용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로 인식
거래내용 판단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 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도 판단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 판단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공공기관 보유정보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현대사회에서 신용이란 하나의 자산관리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신용 관리는 생활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는 대출 시 낮은 대출 이자율을 적용 받고, 대출 한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형성 및 이용

신용정보는 금융소비자가 통장개설, 신용 카드 가입, 보험가입 등의 금융거래나 자동차, 통신서비스 가입 등 비금융권 업체와 거래시 작성하는 “신용정보활용 제공 및 동의서”에 의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정보가 집중되고 관리됩니다.

컴퓨터기술의 발전으로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구축되고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대출이자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 뿐만 아니라 세금 및 공과금의 연체실적, 이동통신 등 전화요금의 연체실적도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과금이나 전화요금 등을 연체할 경우에도 대출 시 추가 이자 지불, 대출 거절, 신용 카드 발급 거절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연체자에 대한 불이익

구 분	내 용
금융거래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대출시 대출거절, 높은 이자율 적용 등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사용이 금지 된다. 신용카드 발급시 발급거절 등 제약을 받게 된다.
사회생활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직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동전화 가입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제품의 할부 구입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신용정보의 확인

신용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확인은 우선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는 금융권의 신용정보와 불량거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금융권 및 비금융권의 신용불량정보와 신용조회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편 신용정보 확인 결과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정정처리를 요청하여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확인 사이트 »

구 분	신용정보회사	사이트
마이크레딧	한국신용정보	www.mycredit.co.kr
크레딧뱅크	한국신용평가정보	www.creditbank.co.kr
올크레딧	코리아크레딧뷰로	www.allcredit.co.kr
사이렌24	서울신용평가정보	www.siren24.com

주 : 전국은행연합회는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에서 확인

● 신용정보의 관리

■ 정확한 자신의 신용정보 파악하기

올바른 신용정보의 관리는 우선 본인의 정확한 신용도 파악에서 시작합니다. 소득에 비해 소비가 과도하고 신용이 너무 많지 않은지 새로운 신용거래시 소득수준이나 상황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신용위험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

신용위험방지 노력은 금융소비자의 의무입니다. 금융거래와 관련된 주요 도구인 신분증의 분실이나 비밀번호 유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본인만 사용하고 새로운 신용카드를 수령하면 반드시 신용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거래사실은 금융기관에 알리고 반드시 정정해야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신용등급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변경시 거래 금융기관에 통보하기

이사, 직장 변경,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 변경 등 본인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청구서 등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대금연체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관리 10계명 »

개인의 신용관리 요령이 특정된 것은 없으나 금융회사나 신용조회회사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① 주거래 은행을 만들자

- 주거래 은행이란 자신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은행으로 급여이체 · 카드대금 결제 · 금융 상품 가입 · 공과금 납부 및 자동이체 등을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평가에 주거래 은행의 거래실적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② 연체상환은 금액보다 오래된 것부터

- 기본적으로 연체는 없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연체가 여러 건 있다면, 금액이 많은 것 보다 오래된 연체를 줄이는 것이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하는데 보다 유리합니다. 장기연체된 채무가 개인신용평가에 더욱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③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기 보다는 오래 사용했거나 혜택이 많은 소수의 카드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실적이 좋아 해당 카드사의 우량고객이 되면 여러 혜택 뿐 아니라 현금 서비스 금리도 낮아집니다.

④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신청은 신중히

- 대부업자의 신용정보 조회기록 또는 거래사실은 개인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자와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상담인지 대출상담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상담에 따른 신용정보조회기록은 개인신용평가에서 제외됩니다.

⑤ 보증은 가급적 피하자

- 신용사회에서 타인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은 본인의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신용도 하락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보증 자체가 대출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보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카드대금은 결제일 이전에 지급해도 좋다

- 카드대금이 연체중이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도 줄어들 뿐 아니라 연체기간도 단축됩니다.

⑦ 자동이체는 필수

-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부주의로 생기는 연체를 막을 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평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잔액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⑧ 영수증 버리지 말자

- 영수증은 신용거래취소, 물품 반환, 이증청구시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이자, 피해방지 수단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실수로 불량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영수증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⑨ 연체독촉 전화도 잘 받자

- 주소지가 변경되면 은행, 통신회사 등 거래업체에 미리 통보하여 실수에 의한 연체 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연체고객의 경우 연락두절 및 우편물 반환도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연체상환을 독촉하는 전화라 하더라도 응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⑩ 본인신용정보를 자주 확인하자

- 본인의 신용정보를 자주 확인하여 잘못된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속히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